

배려와 협력의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2022 전주효문 교육과정 설명회

- 2022 교육과정 안내 / 1
- 출결관리 안내 / 8
- 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 / 10
-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안내 / 11
- 밥상머리교육 / 12
- 부모역할 교육 / 13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14
- 가정폭력 예방 교육 / 15
- 학교폭력 예방 교육 / 17
- 인성·인권 교육 / 19
- 안전사고 예방 교육 / 20
 - 게임중독예방, 성 교육, 양성평등 교육,
 -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통사고 예방, 유괴 예방, 화재 예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25
- 코로나19 대비 예방교육 / 27
- 선행교육 금지 교육 / 28
- 올바른 미디어 사용 교육 / 29
- 장애인식 개선 교육 / 30
-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32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 33
-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 / 36
- 신학기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소통문화 정착 안내 / 38

2022. 3. 16.(수)



전주효문초등학교
JEONJUHYOMOON ELEMENTARY SCHOOL



2022 교육과정 안내

1. 학교 현황

가. 학교 연혁

년 월 일	학 교 연 혁
1993. 09. 01	전주효문국민학교 개교
1996. 03. 01	전주효문초등학교로 개명
2006. 11. 04	효문당(강당 및 급식실) 준공
2021. 09. 01	제 12대 김영란 교장 부임
2022. 01. 07	제 28회 졸업 (총 졸업생 4,045명)
2022. 03. 01	전주효문초등학교 12학급(특수1) 인가

나. 학급 편제 및 학생수 현황

구분	초등학교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도담반	계	계	
학생	남	22	25	14	26	22	21	2	130	26
	여	21	22	13	28	15	28	3	127	19
	계	43	47	27	54	37	49	5	257	45

다.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부장 교사	교사	보건 교사	유치원 교사	행정 실장	주무관	시설 관리	영양사	조리사	조리 종사원	교무 실무사	돌봄 전담사	유치원 시간 제	방과후 행정 실무사	계
남				4					1								5
여	1	2	4	6	1	4	1	3		1	1	2	1	3	2	1	33
계	1	2	4	10	1	4	1	3	1	1	1	2	1	3	2	1	38

2.

전주효문교육의 방향

교육
비전

배려와 협력의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학교

인재상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효문 어린이

	참학력 · 창의	인성 · 나눔	꿈(진로)	건강 · 생명존중
학교 교육목표	참학력을 갖추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어린이	배려와 협력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아는 어린이	나의 빛깔을 찾아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	생명을 존중하고 건강한 삶을 가꾸는 어린이

교육 목표 구현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학력 신장 성장을 돕는 교육평가 교원 전문성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인성 함양교육 민주시민 소양교육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 독서교육 문화예술감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학교 안전한 학교 생태감수성교육
----------------------	--	--	--	---

중점교육	바른 인성 가꾸기	예술 감성 기르기
	참됨을 가꾸는 인성교육	풍부한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기대하는 상	교육공동체	학생상	교사상	학부모상
	다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믿음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학부모

3.

학교 특색교육

바른 인성 가꾸기

참됨을 가꾸는 인성교육

예술 감성 기르기

풍부한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영역	실 천 내 용
바른 인성 가꾸기	생명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꿈학교 생태환경 체험학습 (숲체험, 삼천천변체험) • 자율 스쿨팜 운영 -4,6학년 학교텃밭 활용
	건강한 관계 맺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친구사랑주간(의사소통, 공감 역량) - 칭찬데이(자기존중감 역량) - 애플데이(갈등해결 역량) - 사이버폭력예방활동(학교폭력인식대처역량) - 공동체놀이
예술 감성 기르기	독서로 감수성 키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행사 • 온작품읽기 • 그림책 읽어주기 등 학급독서활동 • 책임는 교실
	1인 1악기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군별 1인 1악기 연주활동 - 1~2학년(실로폰) - 3~4학년(칼림바) - 5~6학년(우쿨렐레)

4.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2022학년도 1학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화 삼일절	1	금	1	일	1	수 지방선거일	1	금 수영교육(3)	1	월
2	수 시업식 인하식 친구사랑주간	2	토	2	월	2	목	2	토	2	화
3	목	3	일	3	화	3	금	3	일	3	수
4	금 학급학생회조직(4,5,6)	4	월	4	수 과학행사주간 영어체험학습(5)	4	토	4	월	4	목
5	토	5	화	5	목 영어체험학습(5)	5	일 어린이날	5	화	5	금
6	일	6	수	6	금 재량휴업일	6	월 현충일	6	수	6	토
7	월	7	목	7	토	7	화 성폭력예방교육주간	7	목	7	일
8	화 진단주간(3,4,5,6) 교통안전교육(1)	8	금	8	일 부처님오신날	8	수	8	금	8	월
9	수 대통령선거일	9	토	9	월	9	목	9	토	9	화
10	목	10	일	10	화 숲공학교체험주간	10	금	10	일	10	수
11	금	11	월	11	수	11	토	11	월	11	목
12	토	12	화	12	목	12	일	12	화	12	금
13	일	13	수	13	금	13	월	13	수	13	토
14	월	14	목	14	토	14	화	14	목	14	일
15	화	15	금	15	일	15	수	15	금	15	월
16	수 교육과정설명회	16	토	16	월	16	목	16	토	16	화
17	목	17	일	17	화	17	금	17	일	17	수
18	금	18	월	18	수	18	토	18	월	18	목
19	토	19	화	19	목	19	일	19	화	19	금
20	일	20	수	20	금 장애인식개선인권교육 수영교육(4)	20	월	20	수	20	토
21	월	21	목	21	토	21	화	21	목	21	일
22	화	22	금	22	일	22	수	22	금	22	월
23	수	23	토	23	월	23	목	23	토	23	화
24	목	24	일	24	화	24	금	24	일	24	수
25	금	25	월	25	수	25	토	25	월	25	목
26	토	26	화	26	목	26	일	26	화	26	금
27	일	27	수	27	금	27	월	27	수	27	토
28	월	28	목	28	토	28	화	28	목	28	일
29	화	29	금	29	일	29	수	29	금	29	월
30	수	30	토	30	월	30	목	30	토	30	화
31	목			31	화			31	일	31	수
수업일	21		21		20		20		19		7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목	개교기념일	1	토		1	화		1	일	신정	1	수	
2	금		2	일		2	수		2	월		2	목	
3	토		3	월	개천절	3	목	안전체험학습(5)	3	토		3	금	
4	일		4	화		4	금		4	일		4	토	
5	월		5	수		5	토		5	월		5	일	
6	화		6	목		6	일		6	화		6	금	
7	수	소방합동훈련	7	금		7	월	스포츠데이주간	7	수		7	토	
8	목		8	토		8	화	장애인식개선인권교육	8	목		8	수	
9	금	추석연휴	9	일	한글날	9	수		9	금		9	목	
10	토	추석	10	월	대체휴일	10	목		10	토		10	금	
11	일		11	화		11	금		11	일		11	토	
12	월	대체휴일	12	수		12	토		12	월		12	목	
13	화	스포츠데이주간	13	목	현장체험학습(1-6)	13	일		13	화		13	금	
14	수		14	금		14	월	독서행사주간	14	수		14	토	
15	목		15	토		15	화		15	목		15	수	
16	금		16	일		16	수		16	금		16	목	
17	토		17	월	애플데이주간	17	목		17	토		17	금	
18	일		18	화		18	금		18	일		18	토	
19	월	생명존중교육 학부모상담주간	19	수		19	토		19	월		19	목	
20	화		20	목	진로적성검사(5)	20	일		20	화	전교학생회선거(3-5)	20	금	
21	수		21	금		21	월		5	수		21	토	
22	목		22	토		22	화	아동학대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22	목		22	일	설날
23	금		23	일		23	수		23	금		23	월	설연휴
24	토		24	월	숲체험주간	24	목		24	토		24	화	대체휴일
25	일		25	화		25	금		25	일	성탄절	25	수	
26	월		26	수		26	토		26	월		26	목	
27	화		27	목		27	일		27	화		27	금	
28	수		28	금		28	월	꿈발표회 주간	28	수		28	토	
29	목		29	토		29	화		29	목		29	수	
30	금		30	일		30	수		30	금	종업식 졸업식	30	목	
			31	월	흡연예방교육주간				31	토		31	일	
수업일	19		19		22		22		0		0			
수업일	1학기		3.1.~8.22(101일)		2학기		8.23.~23.2.28.(89일)		190일					
방학기간	여름방학		7.28~8.22.(26일)		겨울방학		12.31.~23.2.28.(60일)		86일					
학교장재량휴업일			5.6.(금), 9.1.(목)						2일					

7.

방과후 학교 운영

요일/시간		과목	장소	수강료(월)	비고
월, 수		바둑	과학실	36,000원 (교재, 교구 별도)	주 3회 40분 진행
A반	12:50-13:30				
B반	13:40-14:20				
C반	14:30-15:10	주산암산	방과후1교실		
금					
A반	13:40-14:20				
B반	14:30-15:10				
C반	15:20-16:00	로봇제작	미술실		
월	14:30-16:00	디베이트	영어실	무료	주 1회 80분 25주 진행 5,6학년 대상
화, 목		컴퓨터	컴퓨터실	33,000원 (교재, 교구 별도)	주 2회 60분 진행
A반	13:40-14:40	아동요리	요리실습실		
B반	14:50-15:50	종합스포츠	강당		
		과학실험	방과후2교실		
C반	16:00-17:00 (컴퓨터만)	미술	미술실		

8.

돌봄교실 운영

운영기간	2022. 3. 2. ~ 2023. 2. 28.	
운영시간	학기중	12:30~16:30
	방학중	8:30~12:30



출결 관리 안내

1. 지각 : 본교 등교시각(8시 5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정규 교육과정 일과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사유를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하며, 질병이나 기타의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와의 연락 및 이에 따른 출결신고서가 있어야 함.

결석종류	보호자 승인 절차	비고																			
2일 이내 질병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사에게 통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 ☞기한 내에 필요서류 미제출시 <u>미인정결석</u> 처리될 수 있음 																			
3일 이상 질병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증빙서류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진단서 등 병명과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1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스에 미인정결석 처리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연락 후 사유 파악, 미인정결석 담임 확인서 작성 및 제출 ☞교외체험학습을 기일 내 (3일 전)에 신청하지 않고 다녀올 경우 <u>미인정결석</u> 처리 될 수 있음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석당일-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3~5일-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방임 등 아동 학대 징후 발견 시 신고) ◆6일-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7~8일-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내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스에 미인정결석 처리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연락 후 사유 파악, 미인정결석 담임 확인서 작성 및 제출 ☞교외체험학습을 기일 내 (3일 전)에 신청하지 않고 다녀올 경우 <u>미인정결석</u> 처리 될 수 있음 																			
기 타 결 석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 및 기타 결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스에 기타결석 처리 ☞내부결재 																			
출석인정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의 경우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 1개) 제출 ◆여학생 생리통 결석(월1일 결석) 인정 ◆사전에 승인받은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결혼</td> <td>• 형제, 자매, 부, 모</td> <td>1</td> </tr> <tr> <td>입양</td> <td>• 학생 본인</td> <td>20</td> </tr> <tr> <td rowspan="3">사망</td> <td>•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td> <td>5</td> </tr> <tr> <td>• 증조부모, 외증조부모</td> <td>3</td> </tr> <tr> <td>•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d>1</td> </tr> <tr> <td></td> <td>•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스에 결석 처리 되지 않음 ☞기타 사항은 학교 문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출결 관련 신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결석종류	보호자 승인 절차	비고																																				
교외체험학습	<p>♣ 교외체험학습 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 인정 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연속 신청 가능 일수: 연 10일 이내 반일 사용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p>♣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당교사에게 제출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체험학습을 승인하고, 보호자에게 통보서를 발송(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당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가능)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보고서[서식 9]를 제출 																																					
코로나19 관련 결석	<table border="1" data-bbox="300 875 1294 1473"> <thead> <tr> <th>구분</th> <th>방역당국 통보</th> <th>접종상황</th> <th>격리기간</th> <th>검사</th> <th>등교기준</th> <th>증빙자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학생 본인</td> <td>확진자인 경우^①</td> <td>접종완료자, 미완료자</td> <td>7일 격리</td> <td>-</td> <td>등교 중지</td> <td>격리통지서</td> </tr> <tr> <td rowspan="2">밀접접촉자인 경우^②</td> <td>접종완료자</td> <td>수동감시 (7일)</td> <td rowspan="2">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td> <td>등교 가능</td> <td></td> </tr> <tr> <td>미완료자</td> <td>7일 격리</td> <td>등교 중지</td> <td>격리통지서</td> </tr> <tr> <td rowspan="2">학생의 동거인</td> <td>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td> <td>접종무관 (3월 14일부터 적용)</td> <td>10일간 수동감시 (3일내 PCR 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td> <td rowspan="2">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td> <td>등교 가능</td> <td></td> </tr> <tr> <td>밀접접촉자인 경우^③</td> <td>접종완료자, 미완료자</td> <td>격리기간 없음</td> <td>등교 가능</td> <td></td> </tr> </tbody> </table> <p>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p>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종과 무관하게 등교 가능(10일간 수동 감시) (3일 자택대기, 자체격리 권고)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학생) 2차 접종자 / (교직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p>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구분	방역당국 통보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증빙자료	학생 본인	확진자인 경우 ^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인 경우 ^②	접종완료자	수동감시 (7일)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격리통지서	학생의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② (재택치료자)	접종무관 (3월 14일부터 적용)	10일간 수동감시 (3일내 PCR 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등교 가능		밀접접촉자인 경우 ^③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등교 가능		<p>☞ 나이스에 결석 처리 되지 않음</p> <p>☞ 기타 사항은 학교 문의</p>
구분	방역당국 통보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증빙자료																																
학생 본인	확진자인 경우 ^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인 경우 ^②	접종완료자	수동감시 (7일)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격리통지서																																	
학생의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② (재택치료자)	접종무관 (3월 14일부터 적용)	10일간 수동감시 (3일내 PCR 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등교 가능																																	
	밀접접촉자인 경우 ^③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등교 가능																																	
<p>☞ 출결 관련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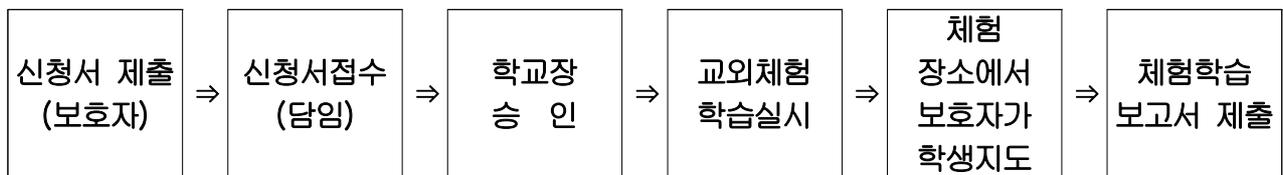


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출석인정기간

-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2)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 가능
-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4)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증명서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 5)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 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 가능 (사설 학원 수강,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는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6)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가 아닌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7)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 학습"을 포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1) 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2) 체험학습 인정 기간 :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하고, 학생의 안전과 소재 파악을 위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연속하여 10일 이상을 사용할 경우 10일에 1번씩 유선으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함.

※ 체험학습 관련 양식 탑재: 전주효문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1. 항목별 표준 가이드라인

항목	표준 가이드라인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따른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
[교과학습 발달상황]	▷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2. 출석인정 경조사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부,모	1
입양	.학생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3.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소위 '셀프 학교생활기록부'를 금지함.

4. 학부모님들이 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

5. . 학생부 증명 발급 방법: ①, ② 중 택일 (담임교사가 발급하지 않음)

① 나이스 대국민서비스→학부모서비스(회원가입, 학부모인증서 발급)→[민원]메뉴 활용

② 해당학교 행정실 방문→학생부 민원서비스

※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시 전년도 기록까지만 출력되어 제공됨.

6. 당해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조회 및 출력물로 제공되지 않으며, 새 학년 시작일 이후에 전년도 생활기록부 내용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함.



밥상머리 교육

1 밥상머리교육이란?

1. 가족이 모여(가족시간 확보)

-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면 밥상머리 교육이 시작됩니다.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실천해 봅시다.

2. 함께 식사하면서(식사공유)

-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식구(食口)'입니다.
-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여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유대감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3. '대화를 통해'(소통과 공감)

- 가족식사는 대화하는 장입니다.
-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들과 하루 일과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는 소통의 시간입니다.

4. '가족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

-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예절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사랑을 만들고 확인하게 됩니다.

2 밥상머리교육 이렇게 합시다

<밥상머리교육 실천지침 10가지>

1.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식사의 날"을 가진다.
2.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3.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4.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한다.
5.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6. 하루일과를 서로 나눈다.
7. "어떻게 하면 좋을까?"식의 열린 질문을 던진다.
8.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한다.
9.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10.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부모역할 교육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요?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성격이나 자라온 환경, 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 양육 방식도 천차만별이죠.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정답은 없지만, 피해야 할 유형은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부모가 바로 자녀에게 독이 되는 부모, '독친'입니다.

<독친(毒親, Toxic Parents)의 유형>

-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는 부모
- 방임하는 부모
-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짠 인생스케줄에 맞춰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부모
-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 경험을 토대로 자녀를 통제하는 부모
- 평소에는 자녀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자녀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부모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이 힘든 이유는 부모가 가진 '자녀의 의미'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를 '자신이 없으면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의미에 따라 내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테면 청소년기 자녀의 성적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꿈을 대신 실현시킬 도구로 여길 경우 부모와 자녀가 모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만의 삶'에 집중하며 자녀를 믿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 해서 성공하고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기대를 모두 포기할 순 없습니다. 다만 포기가 쉬운 부분부터 하나씩 놓을 필요가 있죠.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법이니 조금 더 믿어주고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존중해주는 부모 되기

부모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아이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옆에서 보조해주는 '매니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아이를 이끌어주는 훈육자이자 좋은 역할 모델로서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탬이 돼줘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느껴서 화가 나곤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못 듣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 컸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언어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면 아이들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설명할 때는 한 번에 한 번씩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아동복지법 제 3조제 7호>

2.

아동학대의 후유증

신체적 손상, 지능 및 인지기능의 손상,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학교 부적응, 정신병리, 애착형성의 붕괴,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자학적, 자기 파괴행동 등

3.

아동학대 신고요령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 26조)

가. 1 STEP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
- 학대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나. 2 STEP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다. 3 STEP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 보호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 성학대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동시 신고(129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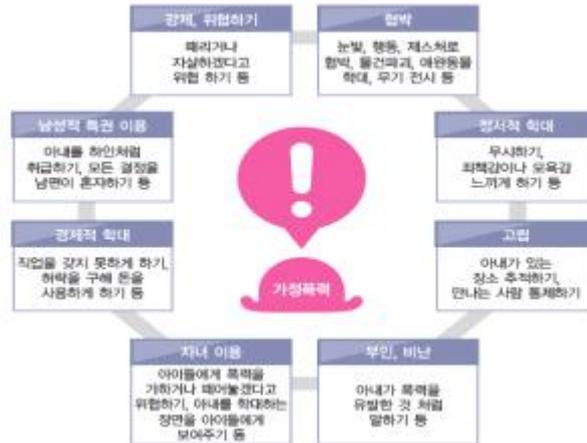


가정폭력 예방 교육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이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



2.

가정폭력의 예방방법

가. 화 조절하기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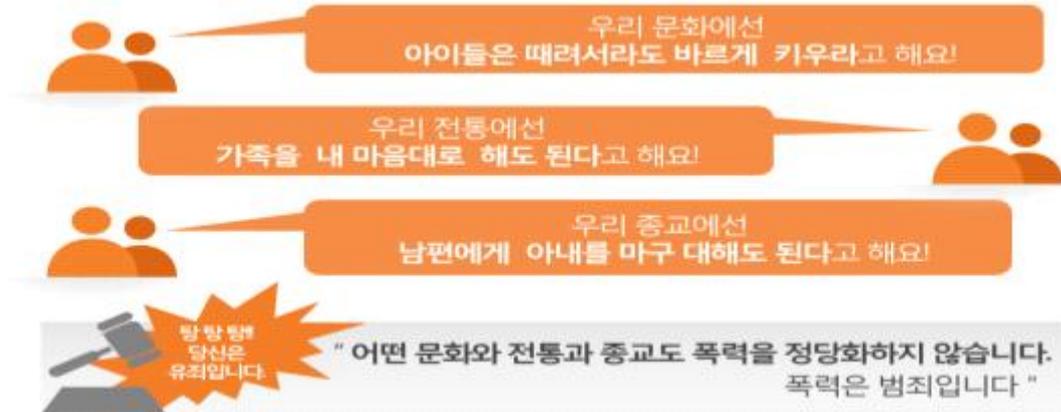
라. 칭찬 한마디 하기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색한 것도 가족입니다. 칭찬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3.

가정폭력의 대처방법

- 1) 혹시 지금 피해자라면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 2)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
- 3)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둡니다.
- 4)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4.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

기타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건강가정센터(1577-9337)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등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위기 개입 상담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 7일 이내 긴급보호
- 지역관련 기관 연계 (쉼터, 법률, 의료 등)
- 13개국 이주여성 자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쉼터 연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평일 9:00 ~ 18:00 정기적인 상담
-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정기관)
-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지정기관)
- 부부 및 집단 상담
- 지역 관련기관 연계 (쉼터, 법률, 의료 등)

- 지속적인 상담,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
- 자녀와 함께 생활 (의식주 무료제공)
- 학습지원(비밀 전화 등)
- 자립 지원 (취업 연계, 직업훈련 등)



학교폭력 예방 교육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언어폭력, 사이버폭력)

1. 언어폭력이란?

위협적이고도 저속한 말이나 욕설 따위를 함부로 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일. 특히 신체적인 약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일로 상대방이 상처를 받도록 하는 말장난 등이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가. 언어의 폭력적 내용

욕설하기, 위협하기, 협박하기, 저주·험담하기, 비웃기(희롱, 조롱), 이상한 소문내기, 약점 건드리며 놀리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흉내 내면서 놀리기, 신체 외모 놀리기, 옷차림 비웃기, 빈정거리기, 면박이나 핀잔주기 등

나. 언어폭력의 징후 점검사항

<친구나 가족(형제·자매)과 대화(전화)할 때>

- 욕설을 자주 한다. • 빈정거리거나 면박을 준다.
- 별명을 사용한다. • 욕설이나 비난의 문자를 보낸다.

다. 청소년기에 욕설을 하는 이유

-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또래끼리의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 습관화되면 기분이 좋아도 욕을 하게 됩니다.
- 화가 난 상황에서 당장 분을 삭이기 위해 내뱉는 분풀이로 욕을 합니다.

라. 언어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 고운 언어 사용, 부모님 모범을 보여 주세요 • 자녀 말에 상처 주는 말은 삼가 주세요!
- 따뜻한 말도 많이 해 주세요! • 함께 욕의 뜻을 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게 하세요.
- 욕을 하는 것은 멋진 것이 아님을 알려주세요. •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 주세요.

부모님이 무조건 야단을 친다고 해서 욕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정에서의 대화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욕을 자주 듣고 하다보면 도를 넘어서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좋은 언어를 모방할 수 있도록, 고운 언어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자꾸 고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마. 가정에서는 이렇게 실천해 주세요.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보다는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자녀에게 말해 주세요.

2.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사이버폭력이 왜 문제인가?

사이버상의 폭력은 신체적인 피해나 금전적인 갈취와 같은 외형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신조어

유형	설명
카따 (카카오톡 왕따)	오프라인에서의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떼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는 것
	카톡방폭 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학생만 남게 하는 것
	카톡감옥 피해학생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괴롭히는 것
기타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의 말만 무시하며 유령 취급하는 행위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의미 없는 메시지를 던져서 휴대폰을 마비시키는 행위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의 '테더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아이템 셔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학생에게 상납 받는 행위

다. 사이버 폭력이 높아지는 이유

-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기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해서
-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어른들의 감시로 벗어나 있어서
- 집단행동으로 별다른 죄책감 없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라. 사이버 폭력 예방법

- 인터넷게임, 채팅, SNS, 휴대폰 메시지 등을 어떻게 이용하든지 관심을 가진다.
- 컴퓨터는 거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 위치하고 사용시간을 정해 놓는다.
- 자녀의 사이버폭력(사이버따돌림)이나 다른 온라인 이슈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한다.
- 자녀가 사이버 상에서 부모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혹은 알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유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컴퓨터 : (greeninet.or.kr) 스마트폰: 스마트보안관(스마트보안관.kr)
- 피해를 당한 경우 자녀에게 직접 해결하려 들지 말고 주변 어른들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 되도록 어른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조언을 주어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직접 개입하여 주의를 준다. (성급히 어른 개입 시 더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3.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

- 1) 전화 : 117 학교 폭력 무료 상담 및 신고
- 2) 온라인 신고 : www.safe182.go.kr
- 3) 스마트폰 앱 : 안전드림, 117 CHAT
- 4) 문자 : #0117
- 5) 학교전담경찰관 : 박율구 (전주완산경찰서)



인생 · 인권 교육

1. 인권 교육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 등의 모두를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인권이라 하겠습니다.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교를 비롯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등의 공식적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제도, 가족, 미디어 등 비공식 학습의 모든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 또한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아이를 이유 없이 차별할 때 **'차별받지 않은 권리'**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내 생각을 마음껏 말과 글과 행동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표현할 권리'**를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걸을 알려주세요.



안전사고 예방 교육

1.

게임중독 예방

게임중독예방학부모 10계명

- 첫째. 자녀와 함께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 규칙 정하기
- 둘째. 자녀가 가입한 웹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가 무엇인지 알기
- 셋째. 온라인에서는 더욱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 넷째.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 게임이 무엇인지 알기
- 다섯째. 자녀 수준에 맞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서비스 설정하기
- 여섯째. 이름, 주소, 학교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 일곱째.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상기 시켜주기
- 여덟째. 디지털기기의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이용하기
- 아홉째.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 남을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도록 하기
- 열째.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불법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어린이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이유는?

- ▷ 어린이는 애정 표현과 성폭력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 ▷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 어린이는 어른보다 힘이 약해서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 성폭력에 대한 정보가 없는 어린이는 모든 성인을 믿습니다.
- ▷ 어린이는 성인의 동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 ▷ 성 안전에 대해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은 성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 ▷ 대부분의 어린이는 어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 ▷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상급생(중.고교생 등)이 지시하는 경우 저항 없이 따르게 되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성폭력예방 교육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 ▷ 성폭력 예방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보면 밝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불신이나 두려움을 갖거나 『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자녀들이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부터 평소에 자녀들의 몸을 소중히 다뤄야하며, 소중함을 자주 말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몸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 ▷ 부모님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성폭력 예방의 기본이 됩니다.

★★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을 위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교육 부탁드립니다.

3.

양성평등 교육



함께 생각해봐요!

양성평등(존중)교육이란?

- ✓ 양성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 ✓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 ✓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과정 속 양성 평등 생각해보기	예	아니오
① 교육내용의 구성이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 정도로 등장하는 등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가?		
② 남성은 적극적, 활동적이며 구원자로, 여성은 소극적, 수동적이며 구원받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은가?		
③ 여성 판사나 여성 기술자 또는 남성 미용사, 남성 간호사와 같이 전통적으로 남성적 직업 또는 여성적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④ 남성이 보통 여성의 일(요리, 설거지, 육아 등)로 여겨지는 활동을, 여성은 남성의 일(가전제품 수리, 못질 등)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을 하는 모습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가?		
⑤ 역사적 인물이나 위인을 제시함에 있어서 성별 안배를 적절히 하여 남녀학생 모두에게 역할 모델을 가질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⑥ 교육내용이 여학생과 남학생의 흥미를 고르게 반영하여 구성되었는가?		
⑦ 교육내용에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강화할 만한 소지가 담겨있지 않은가?		

● **성차이:**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차이

예) 여자는 임신을 할 수 있지만, 남자는 할 수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양이 많아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 **성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을 제한하는 것

예) 남자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

4.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과 대처

알아차리기 - 위험신호

1. 행동적 의사표현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 의미 있는 소유물 정리
 - 자살사이트, 엽기사이트 등에 심취
2. 언어적 의사표현 - 말, 글, 그림, 낙서 등을 통해 자살을 언급
3. 상징적 의사표현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지각, 무단결석이 잦음
 - 평소와 다른 기분 변화나 행동 변화, 식사·수면 상태의 변화

가정에서 대처방법

정신건강의 위험신호



- ▶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
- ▶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 제시
- ▶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
- ▶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 파악
- ▶ 자녀의 장점과 자존감을 높여줌
- ▶ 자녀 칭찬 10계명
 - 칭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칭찬하라
 -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 일의 진척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야단치기보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 가끔 스스로를 칭찬하라

5.

교통사고 예방

- ▶ 횡단보도, 건널목 신호등 지키기, 우측통행 준수 지도
- ▶ 인라인 스케이트 및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지도 (보호장구 착용)
- ▶ 어린이 보호 구역(School Zone)에서의 교통안전 지도 및 홍보

6.

유괴 예방

신학기 대비 실종·유괴 예방 수칙

- ▶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녀의 새 친구,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한다.
- ▶ 부모의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도록 하며, 얼굴을 아는 사람이어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 ▶ 자녀의 이름, 전화번호를 옷 안, 신발 안, 가방 안쪽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써둔다.
- ▶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오게 하거나 심부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 ▶ 도로와 떨어져서 인도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 ▶ 통학로의 우범지역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임을 미리 알려준다.
- ▶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 ▶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예방수칙(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을 반복해서 지도한다.

7.

화재 예방

-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을 알아봅시다.



- 낮은 자세로 기어서 피난해야 합니다.
-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열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 ▶ 피난을 위한 복도, 계단에 적치된 물건은 없나요?

복도, 계단 등은 화재발생 등 유사시 피난통로로 사용됩니다. 계단에 문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피난 시 장애가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상은 피난장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출입문은 개방하여야 합니다.

- ▶ 가정에서 알아야 하는 상식!

가정과 차량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나요?

화재발생 등 유사시 피난대피로는 알고 있나요? 피난장소는 있나요?

1회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눌러보는 것으로도 전기화재는 예방됩니다.

가스레인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누설여부를 확인하세요.

- ▶ 작은 관심과 노력!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화재 신고는 전국 국번 없이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1. 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으로 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성희롱 · 성폭력 판단 기준

- 1)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고려한다.
- 2)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 고려, 즉 일반인이 피해자의 입장에 처했다라고 성적 불쾌감, 모욕감을 느낄만 했는지가 객관적 기준이 된다.
- 3) 미국 판례 :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관점을 객관적 기준으로 채택된다.
- 4) 주관적인 느낌 + 제3자도 동일한 느낌 = 성희롱

3. 성희롱 · 성폭력 발생 시 대처 (사건 발생시▶)

성희롱 발생 시 대처

피해자 -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 / 피해당한 경우 문제를 공론화 시킨 후 해결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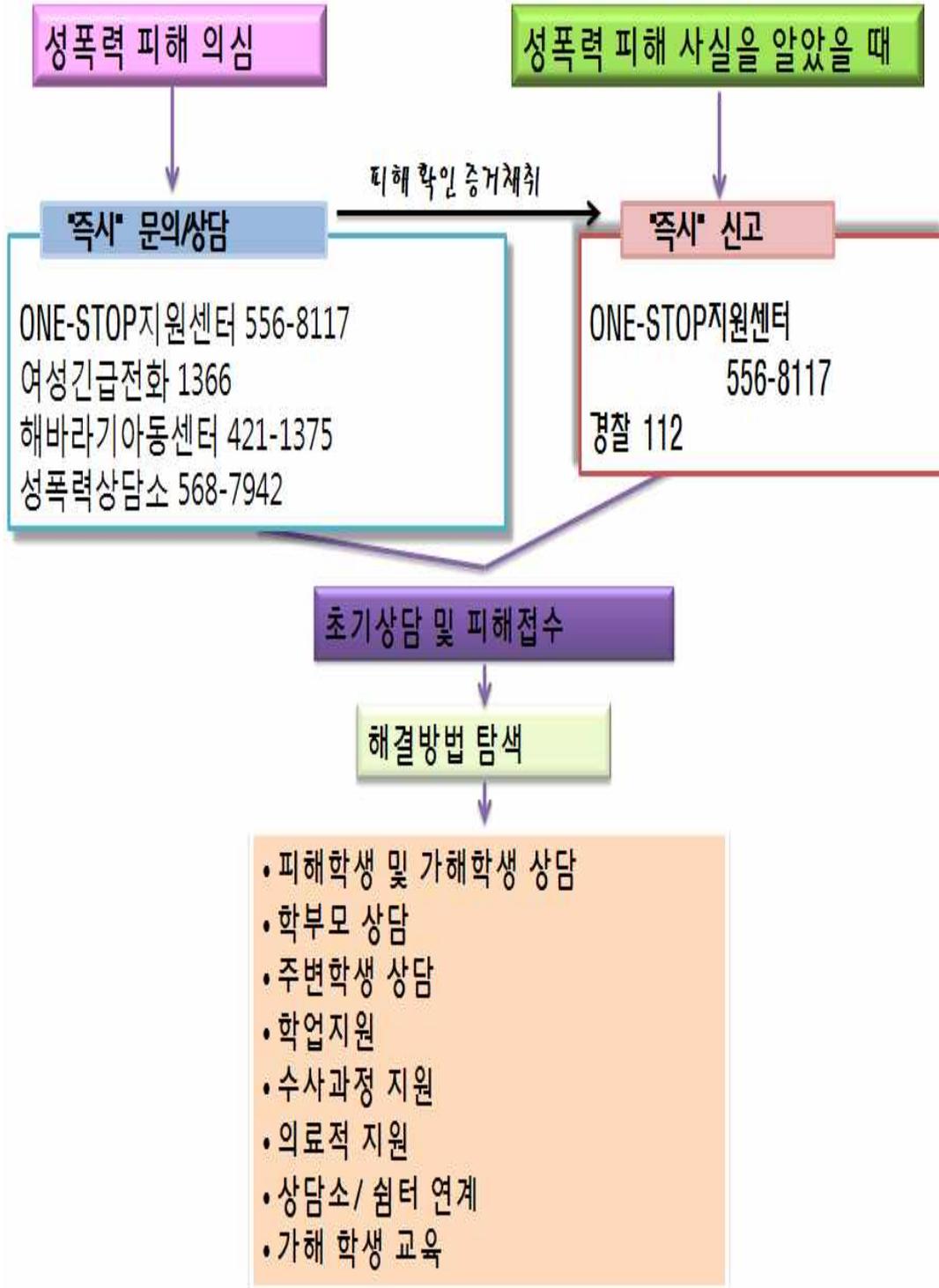
→ 직장에 성희롱 고충 신고접수 → 성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 성고충상담창구: 보건실
(기관 내 해결되지 않으면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제기)

직장(학교)

- 공정한 사건조사 및 처리
- 자체 예방지침에 따른 사건 접수 및 처리 → 신고 접수, 상담
- 사건조사 및 처리 : 행위자 제재(징계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 → 재발방지대책 추진

구분	경미한 사안		중대한 사안
대상	교직원/교직원 교직원/학생	학생/학생	교직원이나 학생 모두
유형	성희롱	지속적인 성적 놀림이나 성추행 등	강제추행 이상 (강간 포함)=성폭행
처리 방법	성고충 상담창구 성고충 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전담반 및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학교 직접 조사·처리 불가, 법적 신고 의무 사항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코로나19 대비 예방교육

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안내

1. 등교 전

-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앱 등을 이용하여 학교(담임교사 등)에 연락합니다.**
- 가까운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방문하여** 진료 후 검사를 실시하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가검사**를 실시합니다.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을 권장합니다.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합니다.
※ 37.5°C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방문 검사 실시

2. 등교 시

- 교실 입실 전 모든 학생은 **KF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발열검사를 실시**합니다.
** **평상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보건용 마스크(KF94) 착용
- 학교에서 37.5°C 이상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조치합니다.

3. 등교 후(수업 중)

- 점심시간(급식실 이동 전) 추가 발열 검사 실시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확인하는 등 학생 건강 상태를 관찰합니다.
- 발열 검사 또는 교육 활동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확인한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상태를 설명하고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하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 이용해 자가검사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2.

신학기 학교 대응 현황 및 방역수칙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대상자의 선택에 한함)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밀폐·밀접·밀집) 환경), 감염취약 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4.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선행교육 금지 교육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근절 안내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 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추진사항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 학교 실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시행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지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

●공교육정상화법 기대효과는?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을 구현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예외

- ❖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교육과정과정상 체육·예술교과(군), 기술가정교과(군), 실과, 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선행학습의 폐해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미디어 사용교육

1.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미디어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이미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교육을 통해 미리 좋은 습관을 기르는 일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유아가 미디어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부터 세심한 관리와 교육을 해야 한다.

2. 미디어를 보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부모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많거나 힘들 때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는 아이가 고마울 때가 있다. 아이의 미디어 사용이 눈에 거슬리면 야단을 치지만 부모가 편한 상황에서는 방치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가 아이들을 건전하지 못한 미디어 사용자로 만들 수 있다.

3. 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

미디어 사용은 하루에 30분씩 매일하는 것보다 주말에 1시간씩 몰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할 수 있게 하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못한다. 또한 아이와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4. 미디어에 집중하는 아이에게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게임이나 텔레비전에 몰두하는 아이에게 '하지 마라', '보지 마라' 등 말로만 하는 야단은 크게 효과가 없다. 부모와 아이 관계만 나빠질 뿐이다. '심심한데 그럼 뭐해요?' 라는 말이 곧바로 돌아올 것이다. 아이가 미디어 대신 즐기고 몰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5. 자녀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아이가 지나치게 미디어에 몰두하는지, 아이가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부모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고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우 감정적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공격적인지, 편견의 요소는 없는지, 눈 건강에 나쁘지는 않은지, 우리 아이 연령에 적합한지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6. 좋은 프로그램이나 기능을 아이와 주기적으로 함께 사용해 본다.

동물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이라면 주말에 20분 정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내서 동물에 관한 사이트나 체험관 사이트를 방문해 새로운 정보를 찾고 함께 나누어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지식이 넓어지고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면,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형성도 이루어질 수 있다.

TIP. 유아기에는 미디어 중독현상이 흔치 않지만 만약 아이가 지나치게 미디어에 집착한다면 혹시 사회·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기는 미디어 중독이 먼저 일어나기보다는 사회·정서적 결핍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1. 장애인은 내 친구?

장애우(x) 장애인(O)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리는 것이 맞을까요?

장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는 장애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자의 '자'는 者(놈 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장애우'와 '장애인'입니다. 이 두가지 표현은 맞는 표현일까요?

1989년 '장애자'라는 표현이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자'를 대처한 '장애인'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우'라는 용어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로 장애인을 좀 더 친근하게 지칭하지는 의미로 友(벗 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우는 말 그대로 장애인 친구라는 뜻입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저는 '장애우'입니다 라고 표현 하기에는 인칭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계층을 표현 하는 용어는 모든 인칭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하게 되는데 ' 장애우' 라는 말은 타인이 부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스스로가 본인을 지칭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친구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장애우'라는 용어는 장애인 친구라는 뜻으로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장애가 있는 60대 노인을 10대 학생이 장애우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 10대와 60대는 친구가 아니니까요. 아직도 언론이나 공공기관, 심지어 동네마트에서도 친근감과 배려의 표현으로 장애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그 뜻을 알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인 공식용어는 장애인이니 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사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2. 장애인 비하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단어들에게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병신', '애자'입니다.

병신이라는 말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나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로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또는 남을 욕할 때 사용합니다.

애자는 장애자의 줄임말로 이 말자체가 욕이 아니라 상대방을 '장애인 같은 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저열하고 열등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므로 굉장히 비인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고자(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폐질자(몸의 한 부분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 찌따(덜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쓰이는 말로 본래 '다리병신'이라는 의미로 6,25 이후 지뢰를 밟고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많았는데 멍청하게 지뢰나 밟았다는 의미로 뜻을 갖게 됨)등이 있는데 모두 어떤 특정인에게 모욕을 주기위해 쓰이게 되는 장애인 비하 발언입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습니다.

◎ 부적절한 용어들

올바른 용어	부적절한 용어
비장애인	정상인
지체장애인	절름발이, 반신불수, 외다리, 난쟁이, 꼬추
시간장애인	장님, 봉사, 소경, 외눈
청각,언어장애인	귀머거리, 병어리, 말더듬이
지적장애인	백치, 정신박약, 얼간이 바부, 등신
정신장애인	정신병자, 미친사람, 광인, 미치광이

장애는 앓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를 앓다'보다는 '장애가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자녀들의 순수하고 올바른 성장 발달과 학습 및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접수하지 않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촌지 및 불법찬조금 유형

1. 촌지 유형

- 가.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나.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 가.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나.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다.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본교와 학부모님들께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하며
“청탁금지법 관련 FAQ”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관련 FAQ ◆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자가 퇴직하신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퇴직자는 퇴직 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특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 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담임선생님과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것이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이셨던 분께 스승의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학부모)과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졸업식 당일에 담임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요?

< 예, 가능합니다. >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날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해당 학부모와 교사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

< 학생인권과 선생님의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전주효문초 >

1. 교권의 개념

가. 교원의 권한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

나. 교원의 권리

1) 전문직 종사자의 권리로서 교권

-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 받음
- 신분 보장권,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활동권

2) 인간으로서의 교권

-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받지 않아야 함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노동권 등

2.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¹⁾ 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1) 소속교의 학생,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동료교원 등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구 분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비 고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교사 성희롱	
	수업 진행 방해, 지시 불이행	
	재물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행	
	교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민원제기, 신분위협, 무리한 피해보상요구)	
	학교생활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위반)	
교육행정기관	교원에 대한 폭언	
학교행정관계자	교원에 대한 폭행	
동료교사	교원에 대한 협박	

다. 교권보호의 목적

-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행·협박 또는 성희롱·모욕 등으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교권(敎權) 보호를 통하여 일반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적 치료, 교권 보호적 학교현장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등 지원
-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으로 교육력 제고
-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서로 존중하는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교원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공개 여부는 교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등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관련 판례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17판결(2013.8.9.)

-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는 다른 정보와 사정을 함께 보면 그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함

□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등 제공 제한의 필요성

○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등 SNS 자동 연동으로 인해 교사 개인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 발생

○ 근무시간 외에 잦은 연락으로 인해 교사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발생

○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 부정청탁 방지

□ 우리학교 안내사항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 및 학급 교육활동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교육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생과 관련된 긴급 상황시(등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경우)나 교육활동중(학급별 시간표참고)에는 **학교 대표전화번호(☎ 221-6834)로 전화하시거나 메모를 남겨주세요**

○ 긴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문의, 긴급하지 않은 의견 제시는 **알림장에 적어 알려주세요.**

○ 문의하시기 전 **알림장이나 학급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활이며 자녀는 화살이다.

화살의 정확도와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활이 한다.
화살을 제대로 쥐어 잡고,
안정된 자세에서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힘껏 잡아당겼다 놓을 때
화살은 과녁에 적중한다.
사수인 조물주는
부모의 손에 자녀를 맡겨놓았다.
조물주가 원하는 것은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는 것이다.
부모의 철학만큼 자녀는 나아간다.

- 이종철의《아이의 달란트를 100배 꽃 피우는 믿는 부모》중에서 -